

2016년도 「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」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「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」 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6월 7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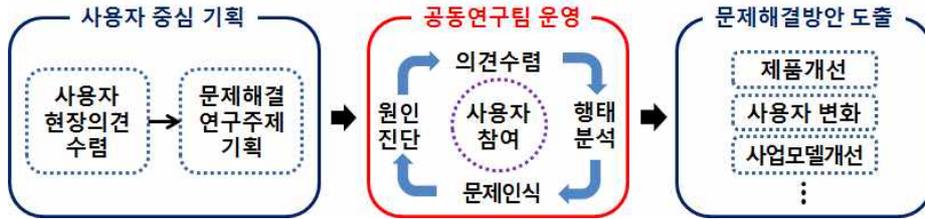
- 목 차 -

1. 사업개요
 - 1-1. 사업목적
 - 1-2. 지원대상분야
 - 1-3.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2. 사업추진체계
3. 사업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여부
 - 3-1. 사업비 지원
 - 3-2. 기술료 징수 여부
 - 3-3.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
4.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
 - 4-1. 지원분야
 - 4-2. 신청자격
 - 4-3. 지원제외 처리기준
 - 4-4. 과제 중복성 제기
5. 평가 절차 및 기준
 - 5-1. 평가절차
 - 5-2. 평가기준
6. 근거법령 및 규정
7. 신청방법, 제출기한 및 접수처
8. 제출 서류 사항
9. 기타 유의 사항
10. 문의처 등

1. 사업개요

1-1. 사업목적

-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동연구팀을 운영하여 에너지기술 사업화 장애문제를 진단·분석하고 문제해결 방안 발굴



1-2. 지원대상분야

- 에너지 제품·시설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, 이해상충 등 수용성 문제와 연계된 이슈

1-3.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
- 사업비: 총 21억원 내외, 지원과제수: 10개 과제 내외

공모방식	지원규모	지원기간
품목지정공모	19억원 내외(과제당 2억원 내외), 9개 과제 내외	1년 이내
지정공모	2억원 이내(과제당 2억원 이내), 1개 과제	1년 이내

*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수 변동 가능

2. 사업추진체계

-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
 -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-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 -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



3. 사업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여부

3-1. 사업비 지원: 공고된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출연금 100% 이하로 지원

3-2. 기술료 징수 여부 : 비징수

3-3.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

□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산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 가능

① 중소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
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15년 11월 7일 이후)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-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-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,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

② 중소기업의 경우,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

- 단,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 금액 불인정

③ 창업초기 중소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)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

④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 별표 제1호*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

* 공통운영요령 [별표1]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/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

- 단,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

⑤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(사업자 등록증,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)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

- ⑥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(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)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
 - ⑦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,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및 에너지진단기관,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8제4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중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
 - ⑧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
 - 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(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~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)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
- 단, 상기(①~⑧)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

□ 중소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

- 중소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(기본과정)을 수료할 경우,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
 -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15년 11월 7일 이후)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
 -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%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(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%를 초과할 수 없음)

4.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

4-1. 지원분야

□ 과제 유형 및 공모형태

- 유형①(품목지정 자유공모) : 생활 및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제품·설비 중 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 마련
 - * 품목지정 자유공모: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
- 유형②(지정공모) :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대상 중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중대형 R&D 대상으로 수용성 문제진단 및 컨설팅 수행
 - * 지정공모 : 연구가 필요한 대상과 목표(RFP)를 지정하여 과제를 공고하고,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

□ 지원대상 과제 목록

구분	순번	과제명	공모방식	'16년도 지원 예산(안)	품목개요서 및 제안요구서
유형 ①	1	·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적용 · 안정화 방안	품목지정	19억원 내외	품목개요서
	2	· 밀집 주거지역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 보급모델 개발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3	·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효율성 · 수용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 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4	·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 ·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용성 제고 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5	· 상업 · 업무용 중소형 건물에 적용을 위한 BEMS 개량 및 보급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6	· 농촌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 대상 재활용 에너지 적용, 수용성 개선 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7	· 건물용 중소형 ESS 설치, 운영, 유지 보수를 통한 수용성 제고 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8	·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 · 표준 개발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9	·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형 생산시설 에너지관리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10	· 집적형 건물단지의 계측기반 에너지 진단 및 이용자 참여형 운영 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11	· 공공 공간의 냉난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보기술 도입 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	12	· 공공시설 내 소수력발전시설 적용 안정화 방안	품목지정		품목개요서
유형 ②	13	· “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개발 및 실증” 중대형 R&D에 대한 수용성 문제진단 및 컨설팅 연구	지정공모	2억원 이내	제안요구서

* 품목개요서 및 과제제안요구서는 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(http://genie.ketep.re.kr) 참조

** [관련자료-1, 2]유형별 「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사항」을 참조하여 사업계획 수립

***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(연구비) 및 총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

4-2. 신청자격

□ (주관기관)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
*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
□ (참여기관)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민사회조직*

*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,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

4-3. 지원제외 처리기준

□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에 대하여는 비적용)
 - 기업의 부도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)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)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 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).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
 - *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-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 이력 누적 수
 - 비영리기관의 경우
 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(마지막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)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

- 영리기관의 경우
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(마지막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)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
-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(마지막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)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
- *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“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”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. 단,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“도전적 R&D 과제”로,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
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
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개요서와 과제제안요구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,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율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(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(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%를 초과한 경우)

4-4. 과제 중복성 제기

-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·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
※ 정부에 의한 기 지원·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

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의 “정보자료실 → 사업정보자료 → 지원과제정보 검색”
- 타기관 공개자료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“국가R&D사업 관리→세부과제 → 세부과제검색”

○ 제기기간 : 2016. 7. 12(화) ~ 2016. 7. 26(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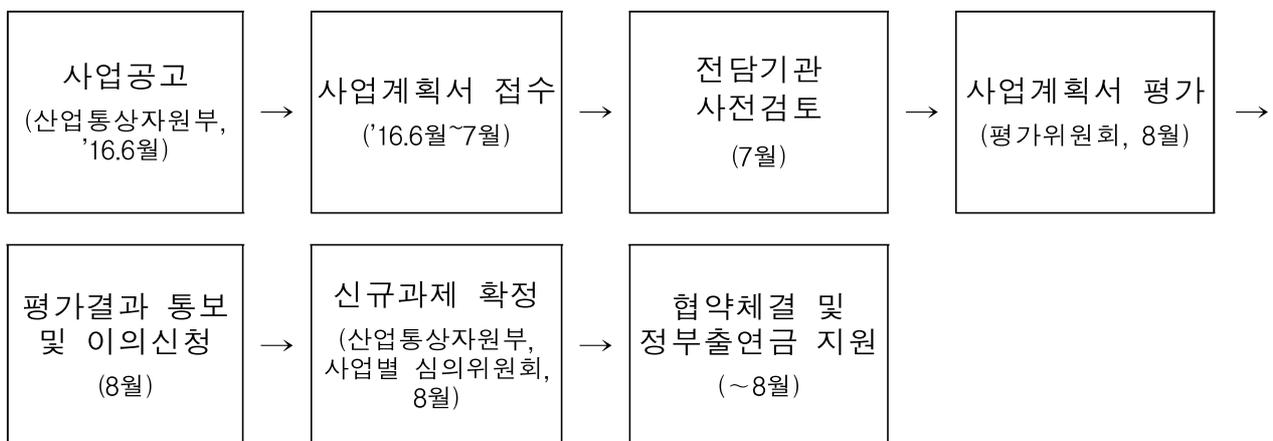
○ 제 기 처 : (06175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

*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

○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
5. 평가절차 및 기준

5-1. 평가절차



- 사전검토: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
-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,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
-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‘제출마감일까지 전산접수된 사업계획서’ 발표로 진행
- 이의신청 :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,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
- 사업별 심의위원회 : 평가결과 조정·심의
 - *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
 - 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5-2. 평가기준

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항목
공동연구팀 역량(30)	- 총괄책임자 역량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
	- 공동연구팀 구성의 완성도
	- 공동연구팀 운영방식의 효율성 및 타당성
추진전략(40)	- 대상(사용자,현장) 설정의 당위성
	- 추진목표(연구결과물)의 명확성 및 타당성
	- 추진내용(문제진단 및 해결방안도출 등)의 구체성 및 전문성
	- 추진방법 및 계획의 체계성
연구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(30)	- 문제해결 및 수용성 개선 가능성
	- 연구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
	- 기술적·경제적·사회적 파급효과 우수성

- 지원대상 과제 :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“지원가능과제”로 하며,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“지원제외”로 분류함. 단,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유형 내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
□ 우대 및 감점 기준: 없음

6. 근거법령 및 규정

□ 근거법령 :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

□ 관련규정
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,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, 「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」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

7. 신청방법,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

□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
구분	기간
신청방법	○ 공고기간 : '16. 6. 7(화) ~ 7. 26(화)까지 50일간
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	○ 양식교부 : '16. 6. 7(화) ~ 7. 26(화) ○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: - 평가원 홈페이지 (www.ketep.re.kr) 열린소식(사업공고) 및 사업관리시스템 (http://genie.ketep.re.kr)
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	○ 전산등록 : '16. 6. 7(화) ~ 7. 25(월) 18:00까지 ○ 신청서 접수 및 제출 : '16. 6. 7(화) ~ 7. 26(화) 18:00까지

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(<http://genie.ketep.re.kr>)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(계획서 및 첨부서류)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

(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)

- *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, 지원분야, 주관기관, 과제명을 필히 기재
- * 인터넷 전산 접수 후 '전산접수증을 출력'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

- 전산 등록처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(<http://genie.ketep.re.kr>)
→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(주관기관이 전산 등록)

- *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(<http://genie.ketep.re.kr> 회원가입 필요)
- *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. 또한, **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**

□ 신청서 접수처

- 제출 주소 : (06175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(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)
- *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(전산접수증 출력)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
- *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8. 제출 서류 사항

서류명	원본/사본	부수	비고
전산접수증	원본	1부	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genie.ketep.re.kr)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
사업계획서	원본	1부	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
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원본	각 1부	-
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원본	각 1부	모든 신청 기관(기업)이 한 장에 날인(기관(기업)별 날장 제출 가능)
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	원본	1부	작성은 2부 (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)
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	사본	각 1부	모든 기관 제출(비영리는 고유번호증 가능)
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	원본	각 1부	-
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원본 또는 사본 *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	1부	비영리와 상장사(거래소·코스닥) 미제출, 그 외 기업은 제출(최근 2년 결산) *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
시민사회조직 참여자격 증빙서류	사본	각 1부	시민사회조직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등록증, 등기 등)

- * 수행기관 :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
- * 과제참여자 :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

9. 기타 유의 사항

□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

- 본 사업 수행과제는 “문제진단 및 기획형 과제”로서 ‘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(고시 제2016-64호)’ 제20조 제2항-2, 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 (다만,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)
-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본 사업 수행과제는 성과활용 보고를 면제하며,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
- 기타 세부내용은 품목개요서 및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
-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(연구비)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-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,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 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
- 개별과제의 기획의도와외의 부합성 모니터링, 과제 간 연계를 지원하는 수용성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며, 선정과제는 멘토단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

□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,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. 다만,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저작권,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. 다만,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,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(추진방법, 편성도, 수행기관별 연구 담당분야, 사업비 구성 등)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
-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 실시·사용에 관한 사항 등은 관련규정*에 따름
* 관련규정: 공고문 6. 근거법령 및 규정

□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

-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,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「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

□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

-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% 이상이어야 함

□ RFP 기획자 과제 참여제한

-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

10. 문의처 등

□ 사업설명회

- 목적 : '16년도 「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」 사업 신규지원 방법,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
- 7개 권역별 설명회: 서울, 목포, 대전, 제주, 대구, 부산, 인천
- 개최 일자 및 장소는 추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열린소식(공지사항)을 통해 공지

□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열린 소식(사업공고) 또는 사업관리시스템(<http://genie.ketep.re.kr>) 참조

- 사업계획서
- 전산 등록 관련
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(☎ 02-3469-8813~4)

- 접수·평가 관련

세부사업명	평가원 담당부서	연락처 (☎ 02-3469-0000)
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	성과확산실	8351, 8356

기타 고객만족 콜센터

고객센터 서비스	연락처
중소·중견기업 전용서비스	1899-0786
에너지 R&D 전화상담 서비스	1899-0784